

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년 10월 일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장례문화 변화로 이용실적 점차 감소하나 사업의 성격상 근무직원은 연중 휴일없이 365일 근무
- 제1차,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2010년 민간위탁하거나 전면폐지하기로 합의
- 시대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생산적인 시정 추진 필요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례지원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현황

- 시행일 : 1998. 2. 1
- 장비및비품 : 차량 1대, 비품 27종
- 운영조직 : 경로복지팀 소속 직원 2명
- 운영실적 : 94건 (9월말 기준)
- 예산액 : 102백만원

○ 검토배경

- 1.2차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2010년 민간위탁 혹은 전면폐지
- 장례문화 변화로 이용실적 감소하나 사업성격상 365일 근무
- 시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 및 예산 효율적인 개선 필요 (1건당 사업비 1,048천원)
- 민간위탁시 예산절감 : 120백만원 정도

○ 개선방안

- 외부적으론 민원발생 최소화,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예산절감과
동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
 -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민간위탁 검토

○ 위탁안

- 위탁기간 : 1년 (1년 시행후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)
- 위탁사업비 : 1건당 (천막 등 설치 및 수거) 200천원
- 사업비 지급방법 : 월별 실적에 의거 확인 후 지급
-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 : 즉시 반환 및 계약 취소
- 위탁 일 : 2010년 1월 1일

장례지원반 운영개선 방안 ⇒ 민간위탁

제1차, 2차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및 장례문화의 변화로 장례지원 실적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례지원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함.

1 현황

- 시행 일 : 1998년 2월 1일(제천시 특수사업)
- 장비 및 비품 : 차량 1대(2.5톤 탑차) 비품 27종 / 12,444점
- 운영조직

구 분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
전담조직	장례지원담당(팀)						경로복지팀
인원 수	7명	7명	7명	6명	5명	3명	2명
	6급1, 운전2, 사무1, 청경1, 일용직2	6급2, 운전원2 청경1, 일용직1	6급1, 운전원2 청경1, 일용직1	6급1, 운전원2 청경1, 일용직1	운전원2명	운전원1명 청경1명	

2 운영실적

(2009년 9월 말 현재)

년도별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
건 수	296건	240건	184건	162건	158건	142건	94
전년대비		81.1%	76.6%	88.0%	97.5%	73.4%	9월말현재

3 예산현황

(단위:천 원)

년도별	총예산	인건비	운 영 비					
			물품구입	공공요금	피복비	급식비	수선비	운영비
2008	148,885	129,915	2,840	600	700	300	2,540	11,990
2009	101,645	85,000	3,550	1,230	735		1,000	10,130

4 검토배경

- 제1, 2차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2010년 민간위탁 하거나 전면폐지 하기로 합의
- 장례문화 변화로 이용실적 점차 감소하나 사업의 성격상 근무직원은 연중 휴일없이 365일 근무
- 시대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로 생산적인 시정 추진 필요 (2008년 기준 1건당 사업비 1,048천원)

5 개선 방안**〈 검토시 중점사항 〉**

- 외부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 내부 환경에 부응하는 방안
-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예산 절감과 동시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
- 단기(1년) 운영 후 시대 및 행정환경변화에 맞는 개선방안 재검토(시행 혹은 전면폐지)
 - ◆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례지원서비스 민간 위탁 검토

- 운영방안 : 민간위탁
- 위탁기간 : 1년 (1년 사업시행 후 재검토)
- 위탁시기 : 2010년 1월 1일**
- 사업비 책정(안) : 1건당 200천원
 - 산출기준
 - 인건비 2명 × 50천원 = 100천원
 - 운영비 1건당 × 100천원 = 100천원(자동차보험, 유류대, 공과금 등)

〈민간위탁시 사업비 비교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 업 비		비교기준	비 고
	총사업비	견당 사업비		
시 직영시	148,885	1,048		
민간 위탁시	28,400	200	2008년 142건	

⇒ 민간 위탁시 120백만원 정도의 예산절감

○ 사업비 지급방법

- 지급시기 : 매월
- 지급방법 : 매월 청구서(서비스 제공 건수) 확인후 지급
- 예산반영과목 : 민간이전, 민간위탁금

○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 : 허위 청구 적발시 즉시 반환 및 계약취소

○ 보유 장비 및 비품 : 위탁관리 및 무상사용

○ 위탁서 (안) : 별첨

6

기대효과

-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민간위탁 실시로 시정의 생산성 향상
- 찾아가는 장례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의 제공과 동시 예산절감 증대

장례지원반 운영 위탁 계약서(안)

제천시장이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 ○ ○ ○ ○에게 “장례지원반 운영”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제천시장과 ○ ○ ○ ○과의 장례지원반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기간) “갑”과 “을”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사업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단, 본 계약기간 내에라도 “갑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을 중단, 변경 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지역 및 사업수행) ①이 계약에 의한 적용지역은 제천시 전 지역을 말하며 운영기간은 1년 365일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09:00~18:00까지로 한다.

②“을”은 장례지원반 위탁 운영 업체로서 민원인이 장례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가 또는 장지에 장례물품을 지원하고 천막을 설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조(의무 및 대민봉사) ①“을”은 사업 대행시 『제천시 장례 지원반』의 명칭을 사용하고 대행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“을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대가성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기피하여서는 않된다.

제5조(비품 및 장비) “을”은 장례지원반 비품 및 장비를 무상사용하되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계약을 이유로 비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.

제6조(사업비 지급) ①“을”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장례지원서비스 신청

및 서 비스 이용 확인서 원본과 함께 사업비를 청구하면 “갑”은 확인 후 서비스 제공 1건당 200,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.

② “을”이 허위로 사업비를 청구하여 적발시 당건에 지급된 사업비는 즉시 반환시키고 “갑”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

③ “을”은 이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7조(자동차보험 가입) “을”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8조(책임) “을”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민원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9조(해약) “갑”은 “을”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“갑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

제10조(계약서의 해석)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“갑”과 “을”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“갑”的 해석에 따른다.

제11조(관할법원)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시에는 “갑”的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2조(계약의 효력발생)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효된다

(갑) 주 소 : 충북 제천시 천남동 12-2번지

대표자 : 제천시장

(을) 주 소 : ○ ○ ○ ○ ○

대표자 : ○ ○ ○ ○ ○